

-2024년 포천소방서 구급보조인력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 공고

2024년 포천소방서 소방공무원 구급보조인력 채용,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포 천 소 방 서 장

1 서류심사 합격자

○ 합격자 명단 : 48명 * 응시번호 순

※ 개별 연락 예정(휴대폰 문자메시지 발송)

순	접수번호	이름	출생연도	순	접수번호	이름	출생연도
1	00001	이○민	00	21	00021	연○리	97
2	00003	이○제	98	22	00016	서○지	97
3	00004	김○신	97	23	00028	이○수	98
4	00005	한○연	99	24	00026	오○우	96
5	00007	이○민	99	25	00029	정○석	95
6	00009	강○모	94	26	00034	강○미	94
7	00012	신○지	00	27	00027	손○우	98
8	00014	강○묵	99	28	00025	이○기	96
9	00002	박○호	97	29	00036	김○태	98
10	00010	차○훈	97	30	00037	황○오	93
11	00017	김○원	94	31	00039	손○진	95
12	00015	류○진	97	32	00042	김○정	95
13	00018	김○혁	98	33	00041	김○○른	95
14	00008	변○담	97	34	00030	김○민	98
15	00011	임○록	97	35	00043	이○정	98
16	00019	박○현	99	36	00044	이○서	01
17	00020	변○혁	93	37	00038	김○	99
18	00022	정○호	97	38	00040	김○지	96
19	00023	이○영	98	39	00047	박○빈	99
20	00024	류○범	94	40	00045	이○우	96

(서류심사 합격자 명단, 뒷페이지 계속)

순	접수번호	이름	출생연도	순	접수번호	이름	출생연도
41	00048	서O윤	01	45	00052	김O현	01
42	00050	김O중	96	46	00053	김O선	00
43	00051	안O경	00	47	00032	김O	00
44	00033	홍O정	97	48	00055	김O내	00

2 면접심사 일정

- 가. 면접일시 : 2023. 12. 21.(목) 14:00 ※ 13:35까지 등록(대기)장소 입실
 ※ 응시불가(실격) : 면접 시작 시간 이전 미등록, 신분증 미지참(본인확인 불가)
- 나. 등록장소 : 포천소방서 3층 대회의실(포천시 군내면 호국로 1538)
- 다. 대 상 자 : 48명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 라. 면접시간 : 개인별 5분 이내 예정
- 마.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본인 미확인 시 면접 응시 불가 / 실격처리)
- 바. 평점기준

평가요소	평가점수(100점)
① 전문지식 및 해당 자격여부	20점
② 창의력, 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20점
④ 대체인력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 품행, 성실성 등	20점

3 응시자 유의사항

- 가.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1가지)을 지참하고 해당일의 등록시간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 신원 미확인 시 응시 불가
- 나. 심사는 지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며, 응시자의 개인 사정 등에 의해 일정 변경은 절대 불가합니다.
- 다. 응시자는 심사 해당 일에 등록을 마친 후 심사 종료 시까지 휴대폰 등 통신기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4

최종 합격자 결정 및 발표

가. 최종 합격자 : 면접대상자 중 면접 점수가 높은 순 9명 최종 합격 결정

나. 예비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를 제외하고 면접점수가 높은 순으로 4명을 선발함
※ 채용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계약 포기, 선발 취소, 사전 예고 없는 퇴직 등 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를 별도 절차 없이 선발(채용)할 수 있음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3. 12. 22.(금) 10:00

라. 채용 계약 : 2023. 12. 27.(수)

- 최종 합격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작성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결과서 제출(개인카드 결제 후 소요비용 환급)
- 배치전 특수건강진단 결과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 채용 취소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붙임 1 특수건강진단 대상(야간작업) 안내

□ 실시목적

- 야간작업은 신체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높아 수면장애, 심혈관 질환 등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므로, "야간작업"을 현행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함

□ 실시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4항 제7호(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 실시대상 및 실시주기

구분	내 용
야간작업 근로자 특수건강진단대상 (대체인력 적용)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실시시기 및 주기	배치전
	배치후 첫 번째 : 6개월 이내
	주기 : 배치 후 첫 번째 검진을 받은 날부터 12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실시 -> 일반건강진단과 동시실시 가능
검사항목 (1차)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신체계측 :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허리둘레
	의사와 상담
질환별 검사항목은 1차 및 2차 검사항목으로 구분하고, 2차 검사는 1차검사 결과 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 실시.	

□ 특수건강진단 실시 전 준비 사항

- 가까운 특수건강진단 지정병원 예약하기 (성명, 주민번호, 예약일, 일반건강진단 동시 실시여부, 사업장등록번호)
- 검사 8시간 전부터 금식(공복상태로 검진)
- 건강진단실시기관은 실시 후 30일 이내 건강진단개인표는 근로자에게 송부, 건강진단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송부

□ 건강진단 사후관리(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10조)

- 사업주는 건강진단 실시결과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질병 요관찰자 또는 유소견자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게 의사의 사후관리조치내용에 따라 해당조치내용에 대해 설명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제134조(건강진단기관 등의 결과보고 의무)
 - 건강진단기관은 그 결과를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통보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참고1) 경기도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실시 현황 및 실시협조요청

-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비용은 35,000원~50,000원(대학병원은 5만원선)
- 경기도 건강검진 협약 병원 40개소 중 경기도 6개소, 서울지역 4개소가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
- 최종합격 후 특수건강진단 기관 별도 안내

[참고2]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2 <생략>

②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략>

④ 사업주는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주기·항목·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3]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제202조제1항 관련)

구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주기
대체 인력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 외한 별표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